

상생협력과 ESG 경영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(자활기업) 지원 협약서

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,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, 자활기업 컴윈(이하 “자활기업”이라 한다)은 자활기업 등 저소득층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ESG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업무협약 체결기관”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“업무협약 체결기관”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“은행”은 불용동산(IT 및 자동화기기 등 불용처리 대상이 되는 물품)을 “연합회”에 기부한다.
2. “연합회”는 정산된 수익금을 저소득층의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 등으로 운용한다.
3. “자활기업”은 기부된 불용동산의 재활용을 물품 특성에 따라 인허가 등 법적사항을 고려한 업무 처리로 사회공헌에 참여한다.
4. “개발원”은 협약 당사자 상호 협력 및 원활한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율한다.

제3조(협약의 변경) “업무협약 체결기관”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합의 하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보안유지) “업무협약 체결기관”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10월 7일

 하나은행

은행장 박성호



 한국자활복지개발원

代 경영본부장 배완복



 COMWIN

대표 정연철



 전국주민협동연합회
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

이사장 박준홍

